

강릉시의회 공고 제 2020 - 7호

「강릉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0년 5월 23일

강릉시의회의장

강릉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강릉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(안 제1조 및 제2조)
- 책무 및 지원계획 (안 제3조 및 제4조)
- 지원사업 (안 제5조)
- 신청 및 선정 (안 제6조)
- 지원제한 등 및 준용 (안 제7조 및 제8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(참조: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

- 주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- 전화: 033-640-4034
- 팩스: 033-640-4070

4. 참고사항

- 강릉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강릉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강릉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일탈을 막고 지역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2. “농업인”이란 법 제3조제2호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청년농업인”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 - 나. 강릉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
4. “가업승계 농업인”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강릉시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청년농업인은 지역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·공급 및 제조, 가공,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가업승계 농업인은 지역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)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지원방향과 목표
2. 창업·경영 상담, 교육·훈련 및 정보제공 방안
3. 지원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
4. 농촌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
5.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사업
2.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·견학·컨설팅사업
3. 전문인력 육성사업
4.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·가공·관로지원사업
5. 브랜드 개발,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
6.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
7. 그 밖에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신청 및 선정)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강릉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

제7조(지원제한 등)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.

②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.

1.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
2. 지원을 받은 후 다른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
3.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4.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
5. 그 밖에 시장이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, 관리,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